

중소기업 *focus*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 전면 시행

- 소기업 범위 개편 시행 및 소기업지원제도 -

1

하나. 소기업 범위의 개편 및 시행

□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소기업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제도가 2016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 6. 25.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 1982년 만들어진 기존의 소기업 기준은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등 18개로 크게 분류(대분류)해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간주하였음
 - ☞ 예)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을 다시 15개로 나누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하여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음
 - 매출액 기준은 업종 특성에 따라 5가지(120억, 80억, 50억, 30억, 10억원)로 나뉨
 - ☞ 예)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이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소기업이지만,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됨

□ 제도개편 배경

- (현행) 기업에 대한 분류는 현재 5개 그룹(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대 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
- (개편 필요성)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중기업 범위기준 : 근로자·자본금 대신 5개 그룹 (1,500-1,000-800-600-400억원)
 평균매출액 적용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개편되어 '15년부터 시행

①	중기업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소기업 기준(1982년 도입)은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는데 따른 개편의 필요성 대두
②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50명, 10명)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편중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
③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현 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
④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임

'11년 대비 '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315개(16%)에 달함 (NICE DB 분석)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최근 소기업의 비중도 계속 증가
 · 소기업 비중(%) : ('10) 67.9 → ('13) 78.2

피터팬 증후군(고용기피) 사례 예시	
▲ 기술·서비스업체인 (주)○○산업은 매출액이 29%(2,200억원→2,838억원) 증가했지만 직원 수는 54명에서 49명으로 감소	
▲ 건설업인 (주)00건설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86.9%가 증가(195.6억원→365.7억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미만인 49명으로 감소	

□ 개선 주요 내용

-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82년에 도입되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 (50-10명)으로 분류하였으나,
- 매출액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 (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 (78.2% → 78.6%)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

구 분	현 행 (~'15)	개 편 ('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수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그 룹	2그룹 (50-10명)	5그룹 (120-80-50-30-10억원)

□ 세부 내용

-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화하였고, 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
 -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였음
 -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개 편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원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명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도, 소매업	10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명	

-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2,369개로 기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함
 - 소기업 수 및 비중(개, %) : (개편 전) 260,884, 78.2 → (개편 후) 262,369, 78.6

- 개선 전 기준 예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농·림·어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사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 경과규정(3년간 유예)

-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둠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

·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	공포일(2015.7.2.)부터 시행
·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의 촉진과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소상공인 기준(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업종별상시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2. 들. 소기업 지원제도

□ 공공조달시장 소기업 지원 제도

규모별 경쟁제도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지정 품목(간판, CCTV 등 7개) 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 · (예) 간판 : 소기업은 5천만원 미만, 중기업은 7천만원 미만 참여 제한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구매 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 제한경쟁입찰 :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1~2.3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

□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①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②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

□ 공제, 신용보증 등 경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 자금 조달을 지원 * '14년 보증잔액 16.7조원 (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14년 14.5조원)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종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031-259-7365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